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시설명			
	소장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소장 성명	생년월일	
		명칭	소재지	
	변경 후	소장 성명	생년월일	
		명칭	소재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상담소([] 소재지 [] 명칭 [] 소장)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